##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69

발의연월일: 2021. 8. 9.

발 의 자: 송재호·조정훈·김주영

민형배 · 신정훈 · 서삼석

이성만 · 김의겸 · 김정호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수 금지 대상 금품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 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설날·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 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 공품
-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품
- 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	3
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2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u>금품</u>	
<u>등</u> <단서 신설>	등. 다만, 설날・추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u>정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농수산물</u>

<u>&lt;신 설&gt;</u>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u>농</u> 수산가공품
<u>&lt;신 설&gt;</u>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장애인기업제품
<u>&lt;신 설&gt;</u>	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
	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
	<u>표</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